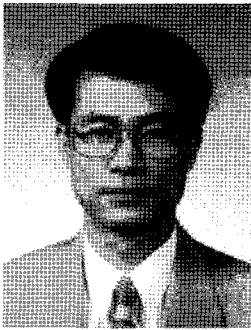


프랜차이즈 가맹상의 보호에 관한 입법례



최영홍
변호사, 법학박사, 광운대 겸임교수

프랜차이즈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진 장점에도 불구하고 폐해 또한 적지 않음은 예비 가맹상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본부의 실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가맹점 모집자들의 허위·과장광고 기타 계약기간 중의 부실지원 등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I. 서언

1. 가맹상의 보호 필요성과 그 요체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만을 설정하는 라이선스계약의 차원을 넘어 가맹본부로부터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과 통제까지 받아가며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종전의 직장을 사퇴한 많은 실직자들이 새로운 창업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날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¹⁾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그 폐해 또한 적지 않다. 가맹상을 모집하려는 자는 시장에서 검증 받은 명성과 독특한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가맹상의 영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능력을 구비하여야 마땅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능력도 없이 가맹점을 모집한 채 적절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가맹본부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폐단은 예비 가맹상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본부의 실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도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고시

1) 한국프랜차이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1999. 8월 말 현재 국내 가맹본부는 1,300개이고 가맹점은 100,000개에 이른다고 한다. LAWASIA Franchising Symposium in Seoul Sept 10, 1999.

등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법령만으로 가맹점 모집자들의 허위·과장광고 기타 계약기간중의 부실지원 등을 충분히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입법을 위해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약 25년간에 걸쳐 가맹상의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온 미국의 예를 검토하는 것이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2. 미국의 관계법령

현재 미국에서는 15개 주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가맹본부의 재정, 운영 및 소송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24개 주가 영업기회의 판매(가맹점 모집 포함)시 모집 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랜차이즈 판매 즉 가맹점 모집 기타 사업기회를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공개할 정보의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y Disclosure Rule(이하 FTC Rule이라 함)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주법무장관이나 증권거래 담당관이 증권거래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준하여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을 관장하고 있다.²⁾ 이들 당국자들은 증권법의 시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한 Midwest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의 후신인 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NASAA)을 통하여 가맹점 모집자가 공개해야 할 정보가 주의 공개법과 FTC Rule

에 부합되도록 일정한 포맷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포맷이 바로 통일프랜차이즈청약회람서(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UFOC)인데,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진 주에서는 모두가 위 UFOC를 법률 또는 시행령의 형태로 채택하고 있다. FTC는 현재 가맹본부로 하여금, UFOC Instructions and Guidelines와 FTC 자체의 Rule 및 Guides³⁾ 중 어느 하나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NASAA는 UFOC Instructions가 예비가맹상으로 하여금 한눈에 공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하에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Guidelines”를 마련하였는데, UFOC Instructions는 가맹본부가 답변해야 할 질문을 열거하고 있지만, UFOC Guidelines는 그러한 답변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NASAA는 1993년에 종래의 UFOC Guidelines를 일부 변경하여, FTC 및 공개에 관한 주법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현재의 신 Guidelines를 채택하였다.

가맹본부가 공개를 요구하는 주지역내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그 주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주 외의 지역에서 모집하려면 FTC Rule을 준수해야 한다. 결국 가맹본부는 어느 경우든 예비 가맹상에 대하여 청약회람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UFOC는 대체로 통일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에 따라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일부 주와 캐나다의 알버타지역에서는 가맹점 모집에 앞서 청약회람서를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 프랜차이즈 공개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주로 Blue Sky law나 SEC Act에 의해 규율해 왔다.

3) The Guides to the F.T.C. Franchise Disclosure Rule.

프랜차이즈와 경쟁정책

위와 같은 공개법 외에도 각 주의 증권 및 부실 표시방지법이 가맹점 모집에 적용될 수도 있다.

II. 기업공개에 관한 연방 및 주의 법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정한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y Disclosure Rule과 각 주의 프랜차이즈 공개법을 통하여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본부 자체에 관한 정보 기타 가맹본부의 영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예비가맹상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I. The FTC Franchise and Business Opportunity Disclosure Rule

(1) 공개에 관한 주법과의 관계

연방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개기준만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는 주법상의 보호가 위 규칙보다 미흡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규칙이 주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칙보다 주법이 상세하게 공개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그 주법의 요건까지를 준수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규칙에 대한 해석지침(Interpretive Guides to the Rule)에서 UFOC를 연방규칙에서 정한 문건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이는 프랜차이즈 공개법이 없는 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연방규칙과 UFOC의 공개에 관한 서식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사용되어야 하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씩을 발췌하여 사용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는 연방거래위원회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각 주에서 정한 보다 상세한 조항의 준수를 피할 수 없다. 요컨대, Uniform Offering Circular상의 요건에 부합되게 작성된 공개문안이라 하더라도 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진 주에 있어서는 그 주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도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하는 반면에 연방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나 연방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변경내용이 담긴 UFOC는 모든 주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일이나 계약금 지급일보다 10영업일 앞선 시점 또는 예비가맹상과 직접 면접하는 시점보다 앞서서 공개에 관한 서류를 가맹상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공정하거나 기망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고 있다.⁴⁾

(2) 연방규칙상의 공개요구 사항

연방규칙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그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가맹본부의 공식 명칭과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및 자회사, 상표, 서비스표, 광고 기타 영업표지
- ㉡ 가맹본부 임직원의 사업경험
- ㉢ 가맹본부 자체의 사업경험
- ㉣ 가맹본부 자체 및 그 임직원의 민, 형사상 소송경력
- ㉤ 가맹본부 자체 및 그 임직원의 파산 경력
- ㉥ 가맹점 운영권 판매 청약서의 내용
- ㉦ 가맹비 및 초기 투자비

4) Rule §§ 436.1(a), 436.2(g), 436.2(5)

- ⑨ 로얄티 기타 가맹상이 계속 지급해야 할 금액
- ⑩ 가맹상이 제휴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한 제휴를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자
- ⑪ 가맹상이 가맹본부나 특정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할 부동산이나 공급품 또는 재고품
- ⑫ 특정상품의 구입대가로 가맹상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액
- ⑬ 가맹본부나 그가 주선하는 자로부터의 자금 차입의 중요 조건
- ⑭ 가맹상이 판매할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대상 고객 또는 판매구역에 대한 제한
- ⑮ 가맹상이 점포운영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는 정도
- ⑯ 계약기간과 종료·취소, 갱신에 관한 조항 및 관련 관행, 당사자의 투자이익 판매나 양도의 조건
- ⑰ 가맹점과 직영점의 숫자
- ⑱ 가맹본부가 입지를 선정하거나 가맹상이 정한 입지를 가맹본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가맹본부가 점포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 ㉑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㉒ 저명인이 관여되는 경우 그의 참여 정도
- ㉓ 가맹본부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⁵⁾

이상의 공개사항은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⁶⁾ 연방규칙에는 이상의 공개사항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점이 통상주의 등록절차와 다른 점이다.

예상소득에 관한 표시는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가맹본부가 그러한 표시를 할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표시가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가맹본부가 연방거래위원회나 예비 가맹상의 요청에 응해 실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된다.⁷⁾

예상소득에 관한 표시는 당국과 가맹본부들 간에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위와 같은 소득표시가 광고나 판촉물 기타 모집과정에서 언급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대로 소득을 올리는 점포의 숫자와 비율을 포함하여 그러한 예상소득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연방규칙에서 정한 표현방식에 따른 신중한 용어의 사용, 그리고 표시된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사하는데 사용될 증거에 대한 통지와 같은 추가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⁸⁾ 판례는 소득보장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선전문구 등에 표시되어 있어서 만일 합리적인 평균인이라면 그러한 표시를 믿을 수 있거나 그 표시가 가맹계약체결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⁹⁾

5) Rule §§ 436.1(a), 436.2(g), 436.2(o)

6) Rule 436.1(b)-(c)

7) Rule 436.1(b)-(c).

8) Rule. §436.1(e).

9) Federal Trade Commission v. Minuteman Press, BFG★11516(E.N.Y 1988). 이 판례에서 연방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그러한 구두의 표현 또는 광고지상의 문구를 믿었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서로 소득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UFOC의 조항과 달리 구두 또는 광고지 문구를 믿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프랜차이즈와 경쟁정책

그리고 이상의 공개요건은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진실에 부합되어야 한다.

(3) 공개 예외사유

연방거래위원회법 제18(g)에 의하면 가맹사업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주로 가맹상 측이 대형사업자로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업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주 프랜차이즈 공개법상의 요건

(1) 총론

미국의 경우 현재 총 15개 주에서 프랜차이즈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상태이다.¹⁰⁾ 그 중 12개 주는 가맹점 모집에 앞서 프랜차이즈 청약서를 주 당국에 등록까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¹⁾ 이들 중 대부분의 주는 증권감독당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컨대 Illinois주 등 일부 주에

서는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관이 일정하지 않다.¹²⁾ 또한 등록일자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예컨대 Michigan주에서는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청약서를 제공하기 전에 당국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¹³⁾ Hawaii주에서는 가맹점모집계약을 체결하기 7영업일전에 당국에 청약회람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⁴⁾ 프랜차이즈 공개에 관한 주법들은 모두 가맹본부가 위와 같은 기간조항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상에게 민사배상청구권이나 계약취소권을 부여할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위 기간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는 사용금지명령과 형사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¹⁵⁾ 일부 주의 등록법은 그 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광고문안까지를 등록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¹⁶⁾

그 밖에도 몇몇 주들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가맹계약의 종료 및 불갱신을 규제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¹⁷⁾ 이들 중 일부에서는 주법상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와 갱신거절이 규제대상이라는 점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¹⁸⁾

10) 프랜차이즈 공개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다음과 같다: California, Hawaii, Illinois, Indiana, Maryland, Michigan, Minnesota, New York, North Dakota, Oregon, Rhode Island, South Dak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11) California, Illinois, Indiana, Maryland, Minnesota, New York, North Dakota, Rhode Island, South Dak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12) Illinois Franchise Disclosure Act §1703(19).
 13) Michigan Franchise Investment Law §445.1507a(1).
 14) Hawaii Franchise Investment Law §482E-3.
 15) Maryland Franchise Registration and Disclosure Act §§ 14-210, 14-211, 14-228, North Dakota Franchise Investment Law §§ 51-19-12 - 51-19-14.
 16) New York Franchise Sales Act Regulations §200.2(a)(8), Washington Franchise Investment Protection Act §19.100.100.
 17) 이러한 법률조항을 두고 있는 주는 다음과 같다: Arkansas,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Hawaii, Illinois, Iowa,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Nebraska, New Jersey, Puerto Rico, South Dakota, Virginia, Washington, Wisconsin.
 18) California Forms, 3CA 캘리포니아 주법상으로는 California Relations Act가 프랜차이즈 계약의 종료조건과 갱신거절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점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 예비 가맹상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교부

연방규칙과 주 법령 모두 공개문서가 가맹상과의 최초면접 전에 전해지거나¹⁹⁾ 적어도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금의 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는 예비가맹상에게 교부되도록 하고 있다.²⁰⁾ 이러한 조항은 가맹본부뿐만 아니라 그 모집대리인이나 중개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²¹⁾ 위의 “최초 면접”이라는 항목과 관련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모집중개인과 일반 영업기회 판매중개인을 구별하여 프랜차이즈 모집중개인의 경우에는 그 직원이 예비가맹상을 만나 관련 책자나 문서를 교부하는 시점을 “최초 면접”일로 보고 있다. 산업쇼를 개최하는 자는 그 산업쇼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시하는 자는 그 전시회에 참여한 상담자에게 그 자리에서 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NASAA는 인터넷을 통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될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²²⁾

3. The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UFOC)

(1) UFOC Guidelines

NASAA는 가맹본부들이 주 및 연방의 공개요청 법령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Instructions and Guidelines(이하 약칭하여

“Guidelines : 기준”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오던 중 1993. 4. 23. 새로운 기준(이하 “신기준”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 신기준은 같은 해 12. 30.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되어 1994. 1. 1.부터 발효되고 있다. 구기준은 청약회람서의 포맷과 스타일 및 내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였지만, 현재의 주법에서는 청약회람서의 그 포맷과 스타일 및 내용이 신기준에 엄밀히 일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신기준은 청약회람서에서 공개할 내용보다도 청약회람서의 형태와 방식에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기준은 청약회람서를 보다 읽기 쉽고, 보다 통일적이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기준은 가맹본부를 지칭하는 의미로 “우리”라는 표현이나 가맹본부의 이니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진부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있다.

(2) 요구되는 공개사항

신기준은 구기준을 보완하고 일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 ㉠ 가맹본부와 그 전신 및 자회사; 구기준은 전신만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신기준은 자회사까지를 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
- ㉡ 이사, 수탁자, 일반 파트너, 기타 임직원, 중간가맹본부와 가맹점 모집중개인 등 가맹점 모집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들의 성명과

19) FTC Rule §436.1(a), (e).

20) FTC Rule §436.1(e).

21) FTC Rule §436(g).

22) FTC v. Greenhorse Communications, Inc., BFG ¶11,402(N.H. 1998); NASAA는 1998. 3. 28.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주공개법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Maryland Franchise Rule18 at 2MD에서는 이를 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와 경쟁정책

- 지위 및 그들의 지난 5년간의 주된 직업
- ㉔ 가맹본부와 그 전신 및 가맹본부의 주된 상표하에 가맹점 모집을 청약하는 자에 대하여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 형사소추 및 중요한 민사소송 기타 이와 유사한 지난 10년간의 소송사례 ; 신기준에서는 중재와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도 이러한 소송사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㉕ 가맹본부와 그 자회사, 전신과 당사자 본인 및 그 임직원에게 대한 지난 10년간의 파산경력
 - ㉖ 입회비 ; 신기준에 의하면, 가맹점 개점에 앞서 가맹본부가 가맹상으로부터 받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모든 대가를 포함한다.
 - ㉗ 기타 비용 ; 이에는 가맹상이 지급해야 할 로열티, 서비스료 및 임차료와 광고비가 포함된다. 신기준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일람표 형태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³⁾
 - ㉘ 초기투자비용 ; 이에는 개점에 앞서 지급되는 모든 비용 및 대체로 개업 후 3개월까지의 초기 운영자금까지를 포함한다. 이들 비용은 개업전 비용부터 시작하여 일람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맹본부나 그 자회사가 초기투자비의 일부를 용자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초기투자비용의 총액은 별도로 청약회람서의 표지에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 ㉙ 재화와 용역의 공급원에 대한 제한 ; 이에는 가맹상이 상품과 서비스, 가구, 비품, 재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동산 등

을 지정된 공급원으로부터 구입하거나 시방서에 합당한 것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및 가맹본부가 승인하는 공급자로부터만 구입, 임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 ㉚ 계약서명 후 가맹상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
- ㉛ 가맹본부나 그 자회사가 제공하는 자금융통계약
- ㉜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개점전 및 개점후의 의무 ; 신기준은 입지선정, 적법한 건물구조, 종업원 훈련 등에 관하여 상세히 요구하고 있다.
- ㉝ 가맹상에게 부여된 배타적 영업지역
- ㉞ 사용이 허락된 상표 ; 아직 그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등록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㉟ 특허, 저작권, 배타적 정보자료 ; 가맹본부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비밀정보나 영업비밀이 있는 경우 그 대체적인 해당분야를 공개하여야 한다.
- ㊱ 가맹상이 실제로 가맹점 영업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 본인이 직접 점포 내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포 지배인에 관한 조항
- ㊲ 가맹본부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
- ㊳ 계약갱신, 계약종료, 권리이전 및 분쟁해결
- ㊴ 저명인사와의 계약내용
- ㊵ 소득주장
- ㊶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포에 관한 정보
- ㊷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23) Federal Trade Commission v. Minuteman Press, BFG ¶11,233(E.D. N.Y. 1997). 이러한 비용에는 일정한 서비스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맹상만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어야 한다. 가맹상이 가맹점 운영권을 타인에게 이전시킬 때 드는 비용도 표시되어야 하고, 동일한 가맹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이전비용은 면제되어야 한다.

회계보고서

- ㉠ 모든 프랜차이즈 계약서 기타 약정서 ; 이에
는 해당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임대차계약,
선택권부여 계약, 구매계약 등이 포함된다.
- ㉡ 영수증

청약회람서 표지의 제목은 "FRANCHISE OFFERING CIRCULAR"라고 해야 한다. 표지에는 다음의 정보가 순서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

- (1) 가맹본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 (2) (왼쪽 상단에) 가맹본부의 주된 상표의 샘플
- (3) 가맹화되는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 (4) 입회비 및 초기투자비의 합계액
- (5) 가맹본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 및 청약서가 당국에 등록되었다 하여 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을 추천하거나 등록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문구
- (6) 위험요소의 공개(주로 타주에서 진행중인 소송 사건)
- (7) 발효일(왼쪽에 공란으로)

III. 결 언

이상 개괄적으로나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기에 앞서 예비가맹상에게 알려야 할 정보에 관한 미국의 실정법을 살펴보았다. 연방법과 주법의 이중체제로 되어 있어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 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고시에 비하여 훨씬 강력하게 가맹상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프랜차이즈 청약서의 등록의무까지를 입법화한 주가 다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면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청약서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이들 공개 및 등록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미국법상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와 우리 입법에 직접적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범 프랜차이즈 통일법에 관하여 살펴보지 못한 점이다. 이들에 관하여는 추후에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공정**